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

2016年 제173回
利川市議會 臨時會 附議案件
〔 條 例 案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ity of Crafts and Folk Art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0

利 川 市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312
----------	---------

제출연월일 2016. 2. 3.

제출자 이천시장

□ 개정이유

-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3)
- 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함.(안 별표 1)
-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비함.(안 별표 2)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주차장법」 제3조, 제11조, 제18조 및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6조 및 제7조의2
-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사전 예고사항 : 덧붙임(의견 있음)

- 2015. 12. 17. ~ 2016. 1. 7.(20일 이상)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협의부서	협의내용	비고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해당 없음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의견 있음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의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 :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이라 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서 신설〉

다만, 주차관리 부스가 있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부스에 부착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표지규격은 부스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제12조의3제2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로 「이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평방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감안한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를 “보조금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를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김 인 영
	담당 팀장 직위·성명	교통지도팀장 최 남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상 호 (☎644~2386)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와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600	250	7,000			
2급지	500	200	5,500	50,000	30,000	
3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 주차장에 입차 후 5분까지는 무료주차로 한다.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600	250	7,000	60,000	36,000	
2급지	500	200	5,500	50,000	30,000	
3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 주차장에 입차 후 5분까지는 무료주차로 한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2급지	300	100	4,000	36,000	22,000	
3급지	200	100	3,000	27,000	16,000	

※ 이천시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의거 신설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한한다.

4. 거주자 우선주차장

(단위 : 원)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주차단위구획	30,000원	20,000원	10,000원

5. 주차요금 세부사항

가. 본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나.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 간 : 08:00 ~ 20:00
- 2) 야 간 : 20:00 ~ 다음날 08:00

다.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당해 주차장에 게시한다.

라.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1) 1급지 : 상업지역
- 2) 2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 3) 3급지 : 녹지지역

마. 주차요금의 가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 가) 15인승이상 2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 나) 25인승이상 승합자동차, 4.5톤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00퍼센트를 부과한다.

바.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하며, 감면은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단,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는 차량
- 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2)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시 일부 감면 대상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은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4급부터 6급은 면제 없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3)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중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차량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서 임신부 모자보건수첩, 임신부자동차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4)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5) 기타 감면 대상

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 까지로 한다.

6) 주차장 설치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대
6. 삭제 <2011.1.5>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0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초과당 1대
9. 창고시설,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267㎡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 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 :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주차환경개선지
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
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
다)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
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
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
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
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
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제6조(주차거부금지)

1. ~5. (생략)

<신 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
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행규칙-----

-----.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시장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거부금지)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생략)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신설>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

다만, 주차관리 부스가 있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부스에 부착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표지규격은 부스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행규칙-----.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시행규칙-----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

② ~ ③ (생략)

제24조(보조금 교부 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보조금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3. (생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1. ~ 4. (생략)

니할 수 있다.

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감안한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시설물 준공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조금 교부 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조금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

1.~ 3.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5. 주차요금 세부사항

가. ~ 마. (생략)

바.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 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은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4급부터 6급은 면제 없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 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 4. (현행과 같음)

5. 주차요금 세부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하며, 감면은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단,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는 차량

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 시시 미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성실납세자 표창(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로 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2)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시 일부 감면 대상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 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은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4급부터 6급은 면제 없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3)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8)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중 3자녀이상 다자녀세대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9) 기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위 감면내용을 소급적용하여 환불하여 주지 아니한다.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 10조 규정에 의한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를 소지한 세대의 차량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4)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 부착 차량

5) 기타 감면 대상

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로 한다.

6) 주차장 설치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생략)	시설면적 70㎡당 1대
2.(생략)	(생략)
3.(생략)	(생략)
4.(생략)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생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6.(생략)	(현행과 같음)
7.(생략)	○골프장 :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8.(생략)	시설면적 350㎡당 1대
9.(생략)	시설면적 400㎡당 1대
10.(생략)	(생략)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나.~마.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67㎡당 1대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7㎡당 1대를 더한 대수
5.(현행과 같음)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대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골프장 :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8.(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350㎡초과당 1대
9.(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267㎡당 1대
10.(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 없으면 -----
----- 따르되 -----
----- 하거나 -----
----- 았을 -----.
가. -----
-----, 그 밖에 -----.
나.~마.(현행과 같음)

<p>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생략)</p>	<p>바. -----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 ----- 사. (현행과 같음)</p>
<p>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p>	<p>2. ----- ----- ----- <u>그</u> ----- -----.</p>
<p>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p>	<p>3.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 -----.</p>
<p>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p>	<p>4. ----- <u>설치해야</u> ----- ----- <u>따라</u> ----- ----- ----- <u>따로</u> ----- ----- -----.</p>
<p>5. (생략)</p> <p>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p>	<p>5. (현행과 같음)</p> <p>6. ----- ----- <u>따라</u> ----- <u>산정할 때</u> ----- ----- ----- ----- ----- ----- ----- ----- ----- ----- -----.</p>
<p>7. (생략)</p> <p>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p>	<p>7. (현행과 같음)</p> <p>8. ----- ----- <u>대해서는</u> ----- <u>따른</u> ----- -----.</p>
<p>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p>	<p>9. ----- <u>주차</u> ----- ----- ----- <u>자동차를</u> ----- <u>주차</u> ----- ----- ----- <u>자동차를 주차할</u> ----- -----.</p>
<p>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p>	<p>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 -----</p>

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2.(생략)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생략)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예의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예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관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TEL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②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③ 주소	⑤ 명칭	⑥ 주차장의 형태	
	⑦ 위치	⑧ 규모	⑩ 준공 예정일 (준공일)	
	⑨ 착공 예정일 (착공일)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신고인 (인)		신고서 작성	접수	
이 천 시 장 귀 하		검토		
첨 부 서 류		없 음	결재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의 교통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천 200분의 1이상일 것)				
3.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			신고증작성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

11.~12. (현행과 같음)

13. -----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

가. -----
----- 출고해야 -----

나. (현행과 같음)

14. 비고 제13호에 -----
----- 비고 제13호 ----- 설치해야 -----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예의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예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관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④ TEL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②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③ 주소	⑤ 명칭	⑥ 주차장의 형태	
	⑦ 위치	⑧ 규모	⑩ 준공 예정일 (준공일)	
	⑨ 착공 예정일 (착공일)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신고인 (인)		신고서 작성	접수	
이 천 시 장 귀 하		검토		
첨 부 서 류		없 음	결재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의 교통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천 200분의 1이상일 것)				
3.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			신고증작성	

<p>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축조서를 포함한다)</p> <p>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p> <p>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규정(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본다)</p>	<p>신고 제 호</p> <p>「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p>
---	--

<p>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축조서를 포함한다)</p> <p>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p> <p>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규정(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본다)</p>	<p>신고 제 호</p> <p>「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p>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2.]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외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 ③ (생략)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 ⑦ (생략)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8·10>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0>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시간으로 본다.

2.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삭제 <2015·8·10>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1·1·5>]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거주자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평방미터이상 확보하여야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교부 방법등) ① 보조금 교부방법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보조금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인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
3.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별표 1] <개정 2015·8·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와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600	250	7,000			
2급지	500	200	5,500	50,000	30,000	
3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 주차장에 입차 후 5분까지는 무료주차로 한다.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600	250	7,000	60,000	36,000	
2급지	500	200	5,500	50,000	30,000	
3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 주차장에 입차 후 5분까지는 무료주차로 한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2급지	300	100	4,000	36,000	22,000	
3급지	200	100	3,000	27,000	16,000	

※ 이천시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의거 신설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한한다.

4. 거주자 우선주차장

(단위 : 원)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주차단위구획	30,000원	20,000원	10,000원

5. 주차요금 세부사항

가. 본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나.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 간 : 08:00 ~ 20:00
- 2) 야 간 : 20:00 ~ 다음날 08:00

다.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당해 주차장에 게시한다.

라.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1) 1급지 : 상업지역
- 2) 2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 3) 3급지 : 녹지지역

마. 주차요금의 가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가) 15인승이상 2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나) 25인승이상 승합자동차, 4.5톤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00퍼센트를 부과한다.

바.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한다.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 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은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4급부터 6급은 면제 없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 시시 미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4) 성실납세자 표창(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로 한다.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8)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중 3자녀이상 다자녀세대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9) 기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위 감면내용을 소급적용하여 환불하여 주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5. 8. 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6. 삭제 <2011.1.5>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5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 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서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의견제출 반영 처리결과 】

□ 제출 의견 요약

○ 제출자 : (주)KR산업(대표이사 박종화)

-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20㎡~30㎡)을 85㎡와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시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원룸형 주택자가 모두 자차를 보유한 것은 어려우며 과투자된 주차시설은 소유자 및 세입자의 비용부담임.
- 2015.8월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를 강화 후 얼마되지 않아 강화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한 남용일 수 있음.
-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 및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이상의 기간을 두고 시행요구.

○ 제출자 : 한상민 외 39명

- 동 조례는 2015.08.10 일부 개정함.
- 추가 개정으로 기존 토지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함.
- 원룸형 주택의 주수요층은 1인가구로 모두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과투자된 주차시설 비용은 세입자 및 소유자의 부담임.
- 개정안은 오피스텔 세대수가 지나치게 제한되며, 토지개발 수익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 손해가 우려됨.(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 부서 심사의견

- 우리시는 대도시와 달리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시 2015년말 차량보유현황(1.2대/세대)등을 검토

하여 설치기준을 시설면적과 세대(또는 호)별로 마련한 것임.

-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부설주차장을 갖추는 것으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비용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제44조에 의거 의견제출토록 하여 의견수렴하였으며, 동 조례의 개정안을 2015.10.15에 입법예고하여 이미 상당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코자 함.

반영 여부 : 미반영

【 부서협의 결과 】

규제사항 검토결과 통보서

안건명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안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성명) 유 상 호
규제사항 검토결과			
세부 검토 내용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가? ②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③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④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⑤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규제의 합리성 및 공정성	① 불공정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가? ② 규제내용과 수준이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종합 검토의견		규제사항 포함 (조례안 제11조 제2호, 제21조의 2, 별표2)	
세부의견 또는 권고사항	<p>조례안 제 11조 제 2호 ~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 할 수 없다.</p> <p>조례안 제21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u>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다만, 해당지역의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기준</p>		
검토부서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	(직급)행정7급 (성명) 신혜경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부분발취

규제개혁위원회 안전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월일	2016. . (제 회)

의 결
사 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지역개발국 국장 이종원
제출연월일	2016. 01. .

목 차

I. 개정안 개요	5
II. 규제 심사(안)	9
< 요약 >	1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첨부자료 >	21
1. 조례개정(안)	23
2. 검토의견서	62

II. 규제 심사(안)

《 요약 》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 규제내용																					
<p>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 <p>-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p> <p>*구분(강화)</p> <p>*조례 제15조제1항 별표2</p>	<p>○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동조례 별표2로 정하고 있음.</p>	<p>○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다음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정함.</p> <table border="1" data-bbox="837 611 1396 1993"> <thead> <tr> <th>시 설 물</th> <th>현 행</th> <th>개 정 안</th> </tr> </thead> <tbody> <tr> <td>위락시설</td> <td>70㎡당 1대</td> <td>67㎡당 1대</td> </tr> <tr> <td>단독주택</td> <td>- 50㎡초과 150㎡ 이하 : 1대 -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td> <td>- 50㎡초과 100㎡ 이하 : 1대 -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7㎡ 당 1대를 더한 대수</td> </tr> <tr> <td>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 <td>-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td> <td>-시설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시설면적 85㎡ 초과 : 70㎡당 1대</td> </tr> <tr> <td>옥외수영장</td> <td>정원 15명당 1대</td> <td>정원 10명당 1대</td> </tr> <tr> <td>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td> <td>350㎡당 1대</td> <td>234㎡ 1대</td> </tr> <tr> <td>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td> <td>400㎡당 1대</td> <td>267㎡당 1대</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현 행	개 정 안	위락시설	70㎡당 1대	67㎡당 1대	단독주택	- 50㎡초과 150㎡ 이하 : 1대 -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 50㎡초과 100㎡ 이하 : 1대 -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7㎡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시설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시설면적 85㎡ 초과 : 70㎡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 10명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350㎡당 1대	234㎡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400㎡당 1대	267㎡당 1대
시 설 물	현 행	개 정 안																					
위락시설	70㎡당 1대	67㎡당 1대																					
단독주택	- 50㎡초과 150㎡ 이하 : 1대 -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 50㎡초과 100㎡ 이하 : 1대 -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7㎡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시설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시설면적 85㎡ 초과 : 70㎡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 10명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350㎡당 1대	234㎡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400㎡당 1대	267㎡당 1대																					

〈 조 문 대 비 표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현 행	개 정 안
1. 위락시설	시설면적 <u>70m²</u> 당 1대	시설면적 67m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50m² 초과 <u>150m²</u> 이하 : 1대 ○ 시설면적 <u>150m²</u> 초과 : 1대에 <u>150m²</u>를 초과하는 <u>100m²</u>당 1대를 더한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50m² 초과 100m²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m² 초과 : 1대에 100m²를 초과하는 67m²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5m²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 시설면적 85m² 초과 : 70m²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u>15명</u>당 1대 ○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0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u>350m²</u> 당 1대	시설면적 234m² 당 1대
9. 창고시설,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u>400m²</u> 당 1대	시설면적 267m² 당 1대

2016년도 제1회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

2016년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의안번호 제 1호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안번호	상 정 안 건
제 1호	규제 심사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 01. 19.

【심의 의결 결과】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서 명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위원장	박태수				
위 원	임규석		○		임규석
위 원	이한일		○		이한일
위 원	김진묵		○		김진묵
위 원	이종원		○		이종원
위 원	이경호				
위 원	김병헌		○		김병헌
위 원	박경미		○		박경미
위 원	송보영		○		송보영
위 원	전춘봉		○		전춘봉
위 원	최용근		○		최용근

수련시설 공장은 시설면적 350㎡ 초과당 1대

※ 심의의결 결과

수련시설·공장은 시설면적 350㎡ 초과당 1대로 수정의결, 나머지는 원안가결